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

1 - 7 - 4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주)빙그레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제2조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주)빙그레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주)빙그레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조 (내부 심의위원회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가. 내부 심의위원회 위원은 (주)빙그레가 회사 내부에 하도급거래를 담당하는 부서 및 준법지원센터 등 유관부서장 중에서 임명하여 선정한다. 단, 위원 중 일부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명하여 선정할 수 있다.
- 나.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거나, 위원들이 별도로 협의하여 위원 내/외부 인원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다. 내부 심의위원회는 1항 및 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장 및 위원을 중심으로 별도 위원회 조직으로서 설치되어 운용되며, 위원회에서는 심의 진행을 위해 실무진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 ① 내부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내부 심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10%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아래 심의사항을 바탕으로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 가.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나. 부당 발주취소 및 반품금지 위반여부
- 다. 하도급대금지급의무 준수여부
- 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마.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③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④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⑤ 내부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⑥ 내부심의위원회는 기타 하도급 거래 관련 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의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⑦ 사후검증 대상은 계약이 종료된 업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기 미거래 업체 중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⑧ 내부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 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⑨ 내부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전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 ⑩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기준)

빙그레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 가.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관련기준을 마련(사규, 업무지침 등)하였을 것
- 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기준을 공개(홈페이지 등)하였을 것
- 다.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것
- 라.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실적(실천사항 내용 심의 등)이 있을 것

제6조 (실천사항의 실효성)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 실천사항의 도입 및 준수 근거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마련하여 둔다.

본 실천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본 실천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실천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실천사항은 2023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실천사항은 202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실천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첨 1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회의록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 차수		회의일시	
장 소		참석인원	
안 건			
심의사항			
결의내용			
기타사항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계약의 적법성 사전심의 체크리스트]

수급사업자명	
목적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담당자	
부서	
직급	
이름(서명)	

No	심의항목	검증내용	심의결과		비고 (특이사항)
			적합	부적합	
1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하도급법 제3조)	계약체결 전 작성한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확인 하였는지 [금액, 지급방법, 조정요건 및 방법과 절차, 납품일/장소 등]			
		계약체결 전 목적물에 주요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100 이상인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뒤, 업체와 하도급대금 연동여부를 협의하였는지 여부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하도급법 제4조)	하도급대금을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는지 여부			
3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하도급법 제5조)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음에도 지정하는 물품, 장비,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는지 여부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2)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5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협력사와 합의한 기간 (최대 60일)내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어음 대체결제수단(외담대)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법정기한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기재하였는지 여부			

참석위원

팀명	성명	날인	팀명	성명	날인

*전자서명으로 본 참석위원 기명날인을 대체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계약의 적법성 사후검증 체크리스트]

수급사업자명	
목적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담당자	
부서	
직급	
이름(서명)	

No	심의항목	검증내용	심의결과		비고 (특이사항)
			적합	부적합	
1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하도급법 제3조)	종료된 계약서에 법정 서면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계약금액, 지급방법, 대금조정요건 및 방법과 절차, 납품일/장소, 검사방법]			
2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하도급법 제 8조)	종료된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수령 시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3	부당반품 (하도급법 제10조)	종료된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부당하게 반품한 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			
4	기술자료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계약종료 이후에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5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계약종료 이후 계약서에 약정한 대금지급기한(최대 60일)내에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담대)을 이용해 지급했다면,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후부터 현금지급기간에 대한 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6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법 제19조)	계약종료 이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협조/자료제출/신고/조정신청 등을 했다는 이유로 수주기회제한, 거래정지 및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지 여부			

참석위원

팀명	성명	날인	팀명	성명	날인

*전자서명으로 본 참석위원 기명날인을 대체할 수 있음

